

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회 등 수당지급에 관한 시행내규

제정 2011.12.15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 이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이사회 또는 각종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등” 이라 한다)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 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공단에 설치된 위원회등 위원의 수당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.

제3조(위원회 등 참석수당) ① 위원회 등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1일 100,000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0,000원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.

② 원격지에서 위원회 등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, 식비,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다.

③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인 자기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,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한다.

④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,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계상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

제4조(지급방법)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비, 식비, 숙박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일반직3급에 준하여 지급한다.

②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게 교통비, 식비, 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및 여비를 지급한다,

- ③ 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